

2002. 4. 10(水)

제5회 한경연 포럼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 주제 : 미국 상속세 폐지의 시사점과 우리제도의 개선문제 · 최명근 경희대 교수

I. 상속과세의 주요국가 추세

상속과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나라의 학계와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그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다음과 같은 비난도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1765년 3월 22일 영국의회가 Stamp Act(당시 영국은 상속세를 인지로 납부한 것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Benjamin Franklin 은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보다 더 확실성이 있는 것은 없다(In this world,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고 했다. 그러한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사람의 사망을 과세사건으로 하거나 또는 조세 징수자에게 돈벌이가 되는 사건으로 하는 아이디어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다”고 했고, Winston Churchill 은 1906년에 상속세야말로 생존한 사람이 아니라 사망한 사람에게 과세하려는 시도(an attempt to tax dead people rather than the living)라고 했다.

근래에는 조세전문가들에게서도 그와 같은 수준의 언급들이 있어 왔다. 1999년에 법률가인 Edward McCaffery 변호사는 상속과세가 중대한 약탈행위라고 했고, 1997년에 경제학자 Bruce Bartlett는 공산당 선언(the Communist Manifesto)의 기본정강 중 하나가 상속권을 폐지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1972년에 연방자본이전세(Federal Capital Transfer Tax : 유산과세형 상속세)를 폐지하고 배우자간의 무상이전을 제외한 유증과 증여에 대해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세제개혁을 하였고, **호주**는 1977년에 상속과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했으며, **뉴질랜드**는 1992년 이후 사망자부터 상속세를 폐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나라는 아니지만, **지브롤탈**(Gibraltar) 도 1997년 4월 1일에 유산세를 폐지했다.

상속과세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속과세의 폐해로 경제성장의 저해, 중소기업체와 가족농장의 파탄, 過消費 행태의 조장, 거액의 납세순응비용, 교묘한 조세회피 방법의 만연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폐지론자들은 상속과세야말로 비효율·불공평 그리고 매우 복잡한 稅金의 課徵이기 때문에 사망세(death tax)는 조세정책의 올바른 모든 규범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직도 계속적으로 상속과세(본래 증여세는 상속세에 대한 補完稅이므로 상속세·증여세를 합쳐서 ‘상속과세’라고 기술하고자 한다)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Bush 행정부가 주도한 상속과세를 폐지법안 즉,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안이 2001년 5월 26일 상하 양원을 통과, 같은 해 6월 7일에는 Bush 대통령이 이에 서명,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1986년 大稅制改革에서 명목세율의 과격적인 인하가 그 후 전세계의 세제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미국의 유산세 폐지도 다른 나라의 상속과세제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지금은 국제간의 자본이동이 활발하고 경제적 국경이 낮아지면서 세제도 국제적 기준에 맞추는 調和가 더욱 가속화하는 시대라고 볼 때 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유산세 폐지는 다른 나라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상속과세 폐지입법의 경위를 소개하는 범위에 머물고자 한다.

II. 미국의 經濟成長과 減稅調整法

1. Clinton대통령 때의 상속세 폐지시도

미국은 2000년에 상속과세(미국의 경우 그 세목의 명칭은 "Estate and Gift Tax"이지만 이하 모두 "상속과세"로 기술한다)를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었다. 그 법안의 요약명칭은 死亡稅廢止法(Death Tax Elimination Act of 2000)이었다. 이는 의회에서 정당을 초월한 지지를 얻어 兩院을 통과했었다. 그런데 그 해 8월 31일에 Clinton대통령은 이 사망세폐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해 의회는 再可決하는데 실패하여 결국 폐기되었다.

2. Bush대통령의 상속세 폐지성공

Bush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로서 유세를 할 때 유권자들과 상속과세제도의 폐지를 포함하는 감세를 공약했다. 그리하여 당선된 후 의회에서 통과된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은 상속과세의 점진적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첫째,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안(유산세, 증여세를 점진적으로 2009년까지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다)을 의회에 상정할 때 Bush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담화를 발표했다.

- 낮은 부담의 조세를 실시하는 나라는 경제성장이 빠르다. 富는 땀을 흘려 일하고, 모험을 택하는 개인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고, 정부계획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over the long run, wealth created by hard-working, risk-taking individuals, not government programs). 낮은 부담의 조세, 적은 규제 그리고 교역이 개방된 나라는 거대한 중앙집권적인 정부에 의해 높은 부담의 조세를 실시하는 나라보다 성장이 빠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민은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

• 높은 한계세율은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중산층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해한다.

높은 한계세율은 저소득층 및 상당한 소득이 있는 계층이 중산층에 접근하려는 것을 제한하는 통행료 징수의 문(tollgate)처럼 작용한다.

• 한계세율의引下는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

낮은 한계세율은 보다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 장래를 위한 저축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創業을 유인하는 효과가 크다. 낮은 한계세율은 정부의 관료조직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신에 혁신적인 기업이 쓸 수 있는 자원을 보다 많이 그들의 손에 남기게 된다.

• 사망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사망세는 자본에 대해 또 다른 부담의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방해한다. 저축에 대한 연방조세의 한계세율이 68%(이는 40%의 연방소득세율과 55%의 사망세율 그리고 州遺産稅額控除의 조합으로 계산된 수치이다)에 달한다. 懲罰的인 높은 세율의 사망세는 중소기업 또는 가족농장에 무거운 부담을 준다. 그리고 사망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묘한 節稅技術이 증폭되어 사망세는 專門化된 변호사와 회계사들로 하여금 이를 하나의 産業으로 발전시키게 한 것이다.

둘째, 2001년 4월 4일에 下院을 통과한 상속과세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2010년까지 유산세 최고명목세율을 현행 55%에서 점진적으로 39%로 인하한다.
- ② 유산세, 세대생략이전세와 증여세는 2011년에 폐지한다.
- ③ 사망 또는 증여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한 추후 자본이득 산정상의 취득가액(2001년 법은 stepped-up basis)에 대하여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셋째, 2001년 5월 23일에 上院이 가결한 상속과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① 세율은 점진적으로 인하하되, 2011년에 현행 최고명목세율 55%를 45%로 한다.
- ② 세율의 引下幅을 줄이는 대신에 통합세액공제의 현행 기준금액 675,000불을 2002년에는 1,000,000불로 증액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증액시켜서 2010년에는 4,000,000불이 되도록 한다.

넷째, 유산세와 증여세의 개정법안에 대하여 2001년 5월 25일에 양원합동조세위원회(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은 다음과 같이 조정·합의하고, 같은 해 5. 26. 이 합의안은 上下兩院을 통과했다. 같은 해 6월 7일에는 Bush 대통령이 이에 서명, 공포한 것이다. 2001년은 미국의 세제에 있어서 대변혁을 가져 온 해로 기억될 것이다. 유산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입법과 그 시행은 특히 세계의 주목을 끌만한 세제상의 대변혁이다

3. 最終通過 內容의 大綱

① 2010년에는 유산세와 세대생략이전세를 폐지한다. 2010년에도 증여세는 폐지하지 아니하고 존속시킨다. 그리고 그 존속되는 증여세 세율은 개인소득세 최고명목세율 35%와 일치시키기로 한다. 그리고 경과규정을 두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다음 <표1>과 같이 연차적으로 유산세와 세대생략이전세의 통합세액공제에 의한 면제금액을 점진적으로 증액시키고, 최고명목세율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인하조정 한다.

그런데 유산세가 폐지되기 전의 과세기간(2002~2009)에 있어서 통합세액공제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 기준금액은 1,000,000불을 한도로 한다. 그리고 유산세가 폐지된 후의 과세를 존속시키는 증여세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최고명목세

율과 일치시킨 증여세 세율에 의해 계산된 세액에서, 1,000,000불에 그러한 세율을 적용·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한다. 이는 증여세를 존속시키면서 그 면세금액을 1,000,000불로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세율은 개인소득세와 같게 하는 것이다.

<표1> 유산세 및 증여세 세율과 통합세액공제 면세금액

역년도	면제되는 금액	최고명목세율*	(단위: 불, %)
2002년	1,000,000	50	
2003년	1,000,000	40	
2004년	1,500,000	48	
2005년	1,500,000	47	
2006년	2,000,000	46	
2007년	2,000,000	45	
2008년	2,000,000	45	
2009년	3,500,000	45	
2010년	유산세는 폐지, 증여세 세율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일치시킴.		

*2001년 현행법의 유산세 등의 최고명목세율은 55%임

폐지하지 아니하고 유지하는 증여세의 최고명목세율은 다음과 같이 개인소득세의 그것과 일치시킨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세율은 2009년 12월 31일 후에 행한 증여에 대하여 적용하게 된다. 본래 증여세는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통설이다.

그런데 미국의 세제개혁에서는 상속세는 폐지하고 상속세 없는 증여세를 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증여를 소득으로 인식해서 이에 소득세를 과세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존속시키는 것으로 한 것인바, 이는 증여세의 기능을 소득세의 보완세적 기능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생전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폐지하면 조세회피가 일어난다는 각계의 지적이 있었다.

자본이득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는 유산세는 폐지하되 증여세는 존속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미국의 상원이 증여세는 계속 유지하며, 사망에 의해 무상취득한 자산에 대한 추후 자본이득 산정상의 취득가액(현행은 stepped-up basis)에 대하여는 새로운 규정(carry-over basis)을 마련하자고 하는 뜻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유산세는 폐지하고 증여세만 부과하는 구조 하에서는 개인들이 생존기간에 증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사망을 계기로 아무런 조세부담도 하지 아니하고 부를 다음 세대로 이전시키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표2> 증여세 세율(2010년부터 적용)

과세 금액 구간	세율	(단위: 불, %)
10,000 이하	18	
10,000 초과 20,000 이하	20	
20,000 초과 40,000 이하	22	
40,000 초과 60,000 이하	24	
60,000 초과 80,000 이하	26	
80,000 초과 100,000 이하	28	
100,000 초과 150,000 이하	30	
150,000 초과 250,000 이하	32	
250,000 초과 500,000 이하	34	
500,000 초과	35	

② 사망자로부터 무상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무상취득자)의 資本利得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현행 규정(steped-up basis)은 유산세 등의 폐지와 더불어 함께 폐지한다. 다음과 같은 수정취득가액승계제도(a modified carryover basis)를 도입한다. 즉, 자본이득 계산에 있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無償承繼한 재산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는 調整取得價額과 사망당시의 그 재산에 대한 公正市場價格 중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사망시점까지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유산의 무상이전을 유상양도로 의제해서 자본이득 과세를 하지 않고, 무상취득자가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자본이득 과세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4. 정책적 含意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속과세를 가급적 강화하여 그 부담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국민정서와 논리가 팽배해 있다. 특히 정경유착으로 부를 축적한 계층이 보유한 富는 상속과세에 의해 이를 조세로 그 대부분을 공공부문이 흡수하는 것만을 至高의 善인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상속과세정책에 대해 회의를 크게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과세 강화 일변도의 정책은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상속과세를 폐지하려면 최소한 전반적인 자본이득과세제도가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완비가 선행되어야 피상속인이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미실현 자본이득을 적정하게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마저 표면상으로 강화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비과세와 감면의 확산·실지 거래가액 과세를 하지 못하고 기준시가 과세를 하는 등 매우 불완전하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잡다하게 복잡하기만 하고 과세대상 자체가 극히 일부분만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상속과세를 폐지하는 경우 부의 소유자가 취득 후 상속 또는 증여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대부분이 稅網을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상속과세를 폐지하려면 최소한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완비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전제라고 본다.

셋째, 상속과세를 폐지함에 있어서 특히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의 정상화가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정상화는 국민의 납세의식이 높거나 금융자산 중 유가증권의 실명거래가 명실상부하게 정착되어야 가능하다.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는 조세회피 내지 포탈의 발각 위험이 클 때에만 개선된다. 그러한 발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가 유가증권(금융자산)의 실명거래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넷째, 우리의 여건은 비록 우리가 상속과세를 폐지하려 해도 아직 우리의 소득과세도가 완속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가 상속과세를 합리화하는 수준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즉 현행 유산과세형을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정도의 개혁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Ⅲ. 상속과세의 존폐논쟁

1. 상속세는 死亡稅인가?

가. 폐지론의 주장

첫째, 상속과세 反對論者들은 사망시점에 과세하는 상속세야말로 비논리적이며, 도덕적으로 가장 혐오스럽다는 것이다. McCaffery 변호사는 1995년 상원 재정위원회의 증언에서 상속과세를 반대하면서 “나는 지난 날 증여세와 상속세가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라고 믿어 왔다. 그런데 그 후의 나의 신념을 지금 고백한다면 나는 지난 날 視覺障礙였는데 지금은 눈이 떠져서 볼 수 있다.”고.

둘째, 사망세는 비도덕적인 세금이라는 것이다.

McCaffery는 상속과세를 도덕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는 바, 사망세는 생존이 끝날 때 남긴 재산에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사망세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많이 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낭비하고 수준 높은 소비생활을 즐겼던 사망자는 면세되는 것이다.

Stephen Pollan과 Mark Levine의 공저 "무일푼으로 죽어라(Die Broke)"와 Thomas Stanley와 William Danko의 공저 "백만장자의 이웃사람(Millionaire Next Door)"에서는 왜 Uncle Sam(미국 정부)은 많은 백만장자인 이웃사람의 무덤 위에서 춤을 춤으로써 부자들로 하여금 술잔치를 벌리게 하고 사망할 때에는 무일푼이 되도록 장려하고褒賞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다. 즉, 경제적 성공에 대해 懲罰을 과하는 것이 상속과세이다.

셋째, 상속과세는 虛構的 象徴性을 가지고 있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독립된 지위에서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형벌을 과하는 법률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얻게되는 것과 같이 상속과세가 부의 집중을 억제하여 많은 사람에게 경제생활의 기회균등을 보장한다는 상징성이 상속과세를 찬성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러한 이상은 상속과세로 실현되지 않는다.

나. 존속론자의 반론

상속세는 과연 死亡稅라고 비난받아야 할 것인가?

상속과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사망시점을 조세부과의 好機로 보는 것이야말로 비논리적이며 혐오스럽다고 한다. 세금의 부과에 의해 상속인들의 슬픔을 가중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非情하다고 본다. 따라서 상속과세에 대해 死亡稅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

- ① 사망은 상속세의 부담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 사망자의 2% 미만의 사람들이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다.
- ② 상속세는 가족사업의 경우 사망한 후 14년에 걸쳐서 상속세를 延納할 수 있다.
- ③ 최소한 상속세는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됨으로써 소득세를 마지막으로 精算(a final settlement)하는 것이다.
- ④ 상속세를 폐지하는 경우 부유층에 대한 조세부담이 어떤 방법으로든 증가되게 된다.
- ⑤ 상속과세의 負擔을 지는 계층은 극소수의 부유한 階層이라는 것이다. 1997년에 미국에서 사망자 1,000명 중 약1명만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었다.

2. 상속과세의 公正性 및 이중과세 문제

가. 폐지론의 주장

첫째, 상속과세는 소득세와의 관계에서 이중적인 課稅라는 것이다.

과세유산을 생존시에 축적한 소득으로 취득했을 경우 과세유산 중 그 취득에 소요된 원본부분은 그 소득을 얻을 때 소득세를 부담했는데 이것이 사망시점에는 유산의 형태로 남아서(증여재산이 되어) 다시 상속세(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이중과세이다.

둘째, 부를 축적한 사람은 그 부를 소비할 수도 있고 그 부를 贈與할 수도 있는 바, 증여에 대해 소비보다 重課稅하는 것은 矛盾이다. 동일한 소득을 벌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은 추가적으로 1달러(an additional \$ One)를 증여했고 다른 한 사람은 추가적으로 1달러를 자기 자신을 위해 소비한다고 할 때 과연 전자에 대해 보다 무거운 세금을 부담시켜야 할 正當한 이유가 있는가?

나. 존속론자의 반론

첫째, 이중과세라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지지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론하고 있다.

과세유산은 대부분이 사망자가 생존하고 있을 때의 保有期間에 발생한 未實現 資本利得이며, 보유자가 사망할 때 이에 대해서 소득과세를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과세가 없으면 이러한 미실현 자본이득이 과세에서 누락된다는 것이다.

둘째, 이중과세 주장이 그 바탕에 깔고 있는 전제는 정밀성을 결하고 있다. 모든 유산가치의 많은 부분(거대한 유산의 가치의 주된 부분)이 소득으로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조세제도에 있어서 상속과세는 소득세를 완성시키는 기능을 한다.

셋째,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취득가액 承繼(Carry-Over Basis)에 의해 자본이득 과세를 충분히 할 수 있는가?

폐지론자들은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자본이득세 과세방법을 개정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런데 당초 취득가액 승계규정의 집행에는 시행상에 어려움이 내재해 있다. 하나는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이 상속한 특정재산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면세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득세를 과세 받지 아니한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상속인에게도 과세할 수 없게 된다. 다른 또 하나는 최소한 두 세대 혹은 여러 세대에 소급해서 그 자산의 당초 취득가액을 추적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상속 등으로 받은 이익은 이를 받은 사람의 노력으로 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과세하지 아니하면 공평하지 않다. 즉, 재산상속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機會均等を 크게 왜곡하고, 그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에 有害롭다는 것이다.

3. 상속과세가 저축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가. 폐지론자의 주장

첫째, 상속과세는 무상이전자의 貯蓄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상속과세는 그러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하여 피상속인이 될 사람(the decedent-to-be)의 통상적인 消費를 증가시켜서 상속과세로 인한 조세부담액 이상으로 貯蓄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상속과세는 投資·生産資本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저축을 감소시키는 조세는 투자를 그 조세부담만큼 감소시킬 것이다. 예를 들면 자본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가족법인 같은 폐쇄회사 등의 기업체는 상속과세에 의해 그 成長이 抑制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속과세를 폐지하면 그러한 기업체 등의 투자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즉 재산의 무상이전(상속 또는 증여)에 대하여 상속과세를 특히 무겁게 하면 비생산적인 정부의 조세수입을 증가시키고, 국민의 생산자본을 희생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상속과세는 惡稅인 것이다.

나. 존속론자의 반론

유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이 그 소유자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저축행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유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稅後 수령하는 유산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저축을 증가시킬 것이다.

만약에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자녀들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의 대가라면 높은 부담의 상속세는 부모가 그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總支出額을 증가시킬 것이고, 이를 메우기 위한 부모의 저축은 증가할 것이다. 또한 거액의 재산상속은 이를 받는 사람의 일하고자 하는 노력을 감소시키고 그들의 소비가 증가시킨다는 증거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Andrew Carnegie의 유명한 추측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과세가 稅後 純相續財産額을 감소시키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사람의 저축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4. 세수의 과소 및 납세순응비용의 과대 문제

가. 폐지론의 주장

첫째, 상속과세를 하고 있는 주요국가에 있어서도 그 세수입이 총세수입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 1997년 기준 OECD회원국들이 상속과세에 의해 얻는 稅收入이 총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1%를 넘는 나라는 프랑스·일본·한국과 미국뿐이다. 그렇게 얼마 되지 아니하는 세수를 얻기 위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속과세를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1999년 기준 유산세·증여세 등을 합친 조세수입은 278억불에 불과하다. 즉, 1930년 대 이래, 미국에 있어서 축적된 부의 총액은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세수입총액에 대한 상속과세에 의한 세수입의 비율은 계속 저하되어 왔다. 이는 상속과세가 부의 집중억제 등의 기능에 무력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상속과세가 정부의 行政費用과 납세자에게 納稅順應費用 및 租稅回避 내지 절세비용을 과중하게 한다. 1994년의 분석에 의하면, 경제적 비효율을 포함해서 납세순응 총비용이 1불을 징수하는데 약 65센트에 달한다고도 한다. 경제적 비효율을 제외시키고 납세의무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검증한 연구에서는 상속세수 1불에 31센트의 납세비용이 소요된다고 했다

나. 존속론자의 반론

첫째,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납세순응비용 및 課稅行政費用의 문제는 과장된 주장으로서 그 크기는 추측적인 수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이는 증거에 의한 추계가 아니고 추측된 정보에 의한 概算的 추계에 불과하여 그 신뢰성이 부족하다.

둘째, 조세회피와 逋脫의 程度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처럼 극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992년 미국의 상속세신고서 중 19%에 대해 상속과세 세무조사를 했다. 세무조사를 받은 것의 60%가 세액의 추징을 받았고, 20%가 세액의 변동이 없었으며, 20%가 세액이 감소한 것으로 그 결과가 나타냈다. 상속세의 조세회피규모는 과세기초의 13%정도이고, 이는 소득세에서 추정되는 그 조세격차(tax gap)보다 낮다고 반론한다.

5. 부의 집중억제, 출발점의 불평등 시정

가. 富와 權力의 集中 문제

상속과세의 존속론자들은 재산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못한 富와 權力의 집중(concentration of wealth and power)을 억제시키고자 하는 취지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당하지 못한 부의 집중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이 견해의 일반적인 이유는 정치분야와 기타 분야에 있어서 상속 등에 의해 부를 보유하게 된 개인들은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형평에 맞지 않는 影響力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정치 등에서의 영향력 행사)는 부의 蓄積과 保有에 관계되는 문제점이지만, 부의 移轉에 관계되는 문제점은 아니다. 그러므로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데는 재산세(a wealth tax) 또는 누진구조의 소득과세가 더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음의 세대로 부를 무상이전 하는 것이 과연 現世代에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그 축적된 부를 사용(예를 들면 부유한 개인이 높은 公共職에 당선되려고 시도하여 부를 지출하는 것 등)하는 것 보다 더 큰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 예컨대 선거의 유세기부금의 제한 등 영향력 행사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더 직접적인 방법이다.

나. 出發點 平等(equality of opportunity)의 저해 문제

존속론자들이 상속과세의 근거로 삼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모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평등한 출발점(equal starting points)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즉, 상속이나 증여는 공정하지 못하게 그를 받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이익(heard-starting points의 제공)을 제공하여 기회균등의 원리를 훼손한다고 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機會均等を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속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폐지론자들은 위의 이론이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출발점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은 人的 資本(human capital)의 차이에 있는 것이다. 이는 유전적인 재능의 차이, 생활환경의 차이, 그리고 장래의 소득과 기타 유복한 생활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子女養育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다. 물론 명시적인 부의 이전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면 다소 기회불균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과세가 이러한 기회의 불균등을 해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진보적 평등주의자가 부의 집중억제를 통한 평등의 실현수단으로 상속과세를 지지하는데 대해 McCaffery는 다음의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 ① 소득과세와 상속과세를 결합시킨 제도는 생존자자간의 증여를 조장하게 되고 따라서 출발점의 불평등 또는 경제적 競爭에서의 보다 평등의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높은 수준의 상속세 세율은 부의 무상이전보다는 오히려 소비를 촉진한다는 사실 때문에 위와 같은 推測的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 ② 자유주의가 오히려 재산상속의 受惠를 적게 받는 계층에게도 도움을 주는 부의 創出에 더 유익하다.

- ③ 현실세계에는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출발점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만약에 평등주의자들이 세대간 부의 무상 이전으로 발생하는 모든 차이를 제거하려고 시도한다면 그들은 상속의 受惠를 적게 받는 계층의 福祉가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위험이 있다. 沒收的인 상속과세는 저축과 투자를 감소시켜 빈한한 사람들의 고용과 소득이 감소한다. 경제자본의 量을 감소시키면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고 소득은 감소되는 것이다.
- ④ 재산상속은 단순히 부를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는 부의 使用인 것이다. 저축의 누적과 그러한 저축을 뒷받침하는 이윤의 증진은 자유주의자들이 선호하는 善이다. 이윤과 저축은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資源의 공동연못(a common pool of resources)을 형성한다. 그런데 저축을 저해하고 방종한 소비를 조장하는 상속과세는 자유사회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沮害的이다.
- ⑤ 평등주의자들이 진실로 자유로운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추구하는 최선의 조세정책은 저축에 대한 과세를 피하고 소비에 과세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저축에 무겁게 과세하는 상속과세제도를 두지 아니하는 조세제도가 최선이다.

6. 黑人事業家 등의 廢止 支援과 거부들의 폐지 반대

가. 黑人事業家 등의 廢止 支援

대부분이 민주당원인 흑인사업자 그룹은 Bush대통령의 상속과세 폐지요구를 지지하고 나섰다. 그들은 상속과세의 유지를 반대하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The Washington Post지와 The New York Times지의 광고문으로 발표했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흑인오락 TV의 사회자(the chairman of Black Entertainment Television)인 Robert L. Johnson이다. 그들의 주장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상속과세제도의 폐지는 백인가족들과 흑백혼혈가족들(African-American families)간에 존재하는 부의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Warren E. Buffet에 의해 주도되는 미국의 부자들은 상속과세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시작했다.
- 상속과세의 支持者들은 상속과세를 폐지하는 경우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Johnson의 시각은 이와 다르다. 巨富人 가족들이 數代에 걸쳐 지녀온 태도 즉, 높은 신분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태도(noblesse oblige attitude)가 상속과세의 지지를 유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 상속과세는 공정하지 못한 이중과세이다. 돈을 벌 때 한번, 사망할 때 또 한번 이렇게 두 번 과세되기 때문이다.
- 상속과세는 특히 근래에 부를 축적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된 흑백의 혼혈인들(African-Americans) 第1世代에 대하여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한 개인들은 재산을 축적할 행운을 갖지 못하고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분에 의해 상속유산으로부터 직접을 혜택을 받아야 할 가족구성원과 친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거부들의 폐지 반대

상속과세 부담을 가장 많이 지게 될 미국의 富豪들이 상속과세제도를 유지하라는 청원을 하였다. 이를 The New York Times 지가 보도한 기사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2001년 2월 13일에 약120명의 미국의 부호들(Warren E. Buffett, George Soros와 William H. Gates가 포함되어 있다)은 의회에 대하여 유산세와 증여세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청원했다. 【이 청원서는 2001년 2월 13일 The New York Times紙 칼럼리스트의 성명이 있는 기사란(the OP-ED page) 중 광고란에 게재됨】 Bush대통령은 2009년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Gates의 부친인 William H. Gates Sr.이 주도한 이 청원에서는 “상속과세의 폐지가 미국의 백만장자와 천만장자의 상속인들을 더욱 잘살게 만드는 반면 알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가족들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청원에서는, 수천만불에 달하는 정부의 稅收損失을 메우기 위하

여 정부는 불가피하게 담세력이 적은 사람들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거나 사회보장, 국민의료보장, 환경보호와 그밖에 우리의 지속적 복지증진을 위해 중요한 정부의 각종 사업예산을 삭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세수손실뿐만 아니라 그 폐지는 부유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과세되는 유산을 감소시키기 위해 출연하는 기부금을 감소시켜 慈善事業을 저해하게 될 것이며, 상속과세는 공익성 기부금의 出捐에 강력하고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므로 상속과세의 폐지는 공익사업에 대해 견디기 어려운 충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그 청원서는 기술하고 있다. Forbes誌의 미국 부호명단에 제4위에 있는 **Buffett**씨는 인터뷰에서.....성공이 상속보다 능력에 기초를 두는 사회(a society in which success is based on merit rather than inheritance)의 실현에 도움을 줌으로써 경제성장을 증진시키는 것이 상속과세의 중대한 역할이고 했다. 그는 상속과세의 폐지는 2020년의 올림픽 선수단을 선정함에 있어서 2000년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나이가 제일 많은 선수를 고르는 것과 같은 정도의 엄청난 과오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진실한 능력주의(a true meritocracy)에 가까이 와 있다. 우리 사회는 “流動性(mobility)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이를 최선으로 발휘할 수 있다. 상속과세가 없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부의 귀족주의(an aristocracy of wealth)**를 갖게 될 것이며, 그러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탁월성은 소멸하고 국가의 자원은 능력이 아니라 유전형질(heredity)이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에는 천만장자의 금융가인 Soros씨, 자선사업가이며 전 Rockefeller & Company의 전 의장이었던 David Rockefeller씨, 록펠러형제재단의 의장인 Steven C. Rockefeller, 그의 가족이 많은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선사업가인 Agnes Gund씨, 그리고 Ben & Jerry's의 설립자인 Ben Cohen씨가 포함되어 있다. Buffett씨와 젊은 Gates씨는 그들 모두가 사망할 때에 그들의 부의 대부분을 遺贈으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서명자 중 많은 사람들은 장기간 공익성 유증을 포함하는 기부금에 크게 의존하는 자선 등 공익사업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유산세와 증여세의 즉각적인 폐지는 공익성 기부금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온다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명자 중 많은 사람이 민주당원이며, 그 중 일부는 민주당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연로한 Gates씨는 인터뷰에서 상속과세 存續運動의 아이디어는 그 자신의 것이며, 그 지지는 초당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청원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 경영하는 농장과 소사업체의 상속을 돕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첨언하면서 “상속과세의 폐지는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경제,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상속과세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IV. 우리제도상 개선할 주요과제

1. 遺産課稅型에서 取得課稅型으로의 전환

가. 유산과세형-현행 우리제도

유산과세형 상속세는 사망자가 남긴 遺産總額의 移轉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무상이전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이를 각자의 相續分으로 분할하기 전의 유산총액에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즉 피상속인 기준의 物的 課稅單位로 상속과세를 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이 과세 유형의 상속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나. 取得課稅型

① 취득과세형 상속세는 受贈者(donee)·受遺者(devisee)·相續人(heir), 즉 재산의 무상취득자(transferee)의 취득재산가액을 과세베이스(tax base)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즉 무상취득자 기준으로 그 승계취득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특히 상속인·수유자 등이 여러 사람인 경우 유산을 먼저 각자의 상속분·遺贈分 등에 따라 분할·계산하고 이와 같이 분할·계산된 각자의 몫(지분)에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취득과세형에서는 상속인 등 각자가 무상취득한 재산가액의 크기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산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서 分散移轉하면 할수록 상속세 부담의 총액은 유산과세형의 경우보다 적어진다. 이 점에 富의 分散을 유도하는 기능이 우수하다. 상속받는 자를 기준으로 그의 취득재산가액에 기초를 두어 누진과세하는 것은 應能負擔의 원칙에도 보다 적합하다.

② 취득과세형이 선호되는 다른 이유로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혈연관계의 遠近에 따라 세율을 차별적으로 설정**하는 상속과세이론과 결합하기 용이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처럼 아들이 상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조카가 상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기에 편리한 것이다. 독일·스위스 등은 혈연의 원근에 따라 상속과세에 차별을 두는 제도를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 과세유형의 전환 필요성

<가설 예와 배우자분 상속세 계산>

상속재산가액은 25억원인바, 상속개시전 증여액과 채무액은 없고, 장례비용은 10,000,000원인데, 유산은 장례비를 공제한 잔액을 생존배우자 5억원, 장남 12억원, 딸 7억9천만원으로 協議分割하였다.

<상속세 총액 계산>

상속재산가액	2,500,000,000
(-)장례비	10,000,000
<hr/>	
상속세 과세가액	2,490,000,000
(-)일괄공제	500,000,000
(-)배우자상속공제	500,000,000
<hr/>	
상속세 과세표준	1,490,000,000
(×)세율40%	
<hr/>	
상속세 산출세액	436,000,000

<배우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의 계산>

$$436,000,000 \times 500,000,000 / 2,490,000,000 = 87,550,200$$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면 이러한 모순이 제거 되고 상속과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것이다.

2. 개선되어야 할 주요사항

가. 全面的 包括主義 導入의 禁止

상속과세에서 전면적인 포괄주의의 도입은 制止되어야 하고, 이미 도입된 항목별 포괄주의 규정들도 이를 삭제해야 마땅하다. 또한 항목별 포괄주의가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이를 의제하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그 이유는 납세자에게 재판권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헌법의 정신에 합치되기 때문이다. 포괄주의의 문제점에 불구하고 항목별 포괄주의에서 더 나아가 증여세에 전면적으로 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우리 사회에서는 풍미하고 있고, 이의 도입을 시도하는 하려고 하고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상속과세제도에 의해 부를 분산시키는 데 성공한 나라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포괄적 증여의제규정을 두어 증여세를 지나치게 중과세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경제 운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증여의제규정은 모두 자본거래를 심히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의제규정 중 상당 부분은 삭제해야 할 것이다.

나. 死亡前 財産處分金額 등의 相續財産合算 廢止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 등을 부담한 경우로서 그 돈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
-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의 구분을 말한다.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위의 두가지 외의 기타자산

아들이 돌아가신 부모가 사용한 돈의 사용처를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돈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모순이며,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는 폐지해야 한다.

다. 非上場株式 上場利益 등의 贈與擬制 廢止

상장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또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가
-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상장하거나 협회 등록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 受贈者나 취득자가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그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또는 5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3년 전에 증여를 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한 때에는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서 다시 상장할 때 상장시점의 주가 상승하면 그 상승분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이것이 상장이익 등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제도이다.

전환사채 등의 전환이익에 대하여도 이와 같이 그 전환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모순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실상 상장이익 또는 주식전환이익의 증여의제는 당초 증여와의 관계에서 2중적으로 인식하는 모순이 있다.
- ② 증여가 일어나면 수증자는 확정적으로 수증재산을 취득하여 그의 권리와 책임 하에 수증재산을 지배·관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증시점 후 경제상황의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수증재산의 경제가치의 증가를 다시 증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③ 당초 증여 등의 가격과 상장이익 또는 주식전환을 할 때의 가격과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익은 그 본질이 미실현 자본이득이다.

주식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정비하면서 조세논리에 맞지 아니하는 이러한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V. 결론

상속과세가 소득과세와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이중과세를 하는 것으로서 저축에 저해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폐지론의 주장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부의 集中抑制 내지 출발점의 均等化라고 하는 추상적 목적에 너무 기울려져서 과중한 상속과세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른 선진국들은 상속과세제도의 폐지를 논하거나 폐지하고 아니면 상속과세를 오히려 완화하고 있다.

- 영국은 상속세 세율을 단순비례 40%로 하면서 증여에 대하여는 대부분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그 세율은 단순비례 20%이며, 증여를 과세유산에 합산과세하는 기간을 7년으로 하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합산되는 증여의 과세평가액을 점진적으로 적어지게 하는 점진적 경감방법(tapering relief)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생전의 증여를 오히려 세제가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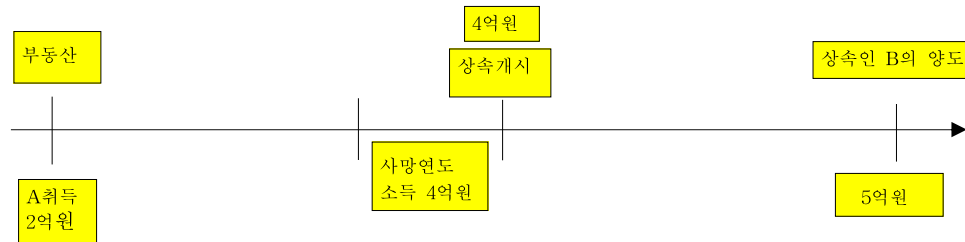
• 독일의 경우에는 상속세 세율을 혈연의 遠近에 따라 3개 등급의 차등세율을 두고 있는데,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의붓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1等級)의 경우에는 그 세율이 7%~30%이고,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멀거나 없는 경우(3等級)에는 그 세율이 17%~50%로 되어 있다. 이는 부를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정부와 학계는 소득과세의 적정화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사회인프라 구축 그리고 소득과세제도 자체의 적정한 정비에는 태만하면서 상속과세의 강화만을 주장·시도해 왔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우리의 상속과세제도를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하게 하여 납세자의 순응을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특히 중산계층의 그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선 무리한 각종 의제규정을 상속과세법에서 제거하고 세율체계를 다시 인하·정비하면서 과세체계를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상속과세의 완화 나지 폐지하는 주요국가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소득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한 후 상속과세의 폐지여부를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끝)

<참고>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첫째,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사망년도에 소득은 없다고 가정)

- 상속재산 4억원에 대해 B에게 상속세 과세,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은 4억원으로 됨.
- B가 상속재산을 양도하면 '5억원-4억원=1억원(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이 경우 A의 취득가액 2억원에 대하여는 그 소득이 생길 때 이미 소득세를 과세받은 재원인데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는 2중 과세의 모순이 발생함. 이 제도는 **우리나라**와 현재 많은 다른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음.

둘째, 상속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만 과세하는 경우(사망년도에 소득은 없다고 가정)

- ◆ 상속을 양도로 보고 상속개시시점에 양도소득세만 과세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4억원-2억원=2억원'과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만 과세함.
이렇게 하면 A의 취득가액 2억원에 대하여 소득세와 상속세를 두 번 과세하는 모순이 없음.
이 제도는 **캐나다**가 채택하고 있음.
- ◆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음은 물론 상속인 B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만 과세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B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A의 취득가액을 공제하는 것임.
즉, '5억원-2억원=3억원'에 대해 B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만약에 B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면 상속세도 양도소득세도 과세받지 아니하는 것임.
이 제도는 **2001년에 미국**이 채택하게 되었음.

셋째, 사망 직전연도 사업소득 4억원을 예금한 경우(상속부동산은 없다고 가정)

현행 우리나라 제도하에서는

- 사업소득 4억원에 대해 최고세율 36%로 소득세가 부과됨.
- 사망시의 예금 4억원에 대해 최고세율 50%의 상속세가 또 부과됨.
이 경우에는 4억원에 대해 소득세와 상속세가 두 번 과세되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임.